

영등포구의회
제129회 정례회

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檢 討 報 告 書

2007. 7. 9



行 政 委 員 會
(專 門 委 員)

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1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6. 25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2 제안이유

-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분 및 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고자 기금 출연액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
-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청사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함

3**기금조성규모**

(단위:천원)

구 분	운용계획안	운용계획(당초)	증(△)감	비 고 (증가율)
통합 관리 기금	24,903,143	14,903,143	10,000,000	167.1%
청사건립기금	14,874,000	4,874,000	10,000,000	305.2%

4**주요내용**

- 통합관리기금 출연금 10,000,000천원
- 청사건립기금 출연금 10,000,000천원

-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구 각 개별 기금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능률성 증대 등을 위하여 지난 2006년 설치하여, 당초 기금운용계획 149억 314만 3,000원에서 금회에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에 출연한 자금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249억 314만 3,000원으로 운영하고
- 청사건립기금은 우리구 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5년 설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 48억 7,400만원에서 100억원을 출연하여 148억 7,400만원으로 운영하여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- 두 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, 주요 재원은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분 및 조정교부금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관련법령에 저촉함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.

2007. 7. 9

보고자 : 김 완 섭

[관련법령]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

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